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논평]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날 짜 2016. 11. 4. (총 2 쪽)

논 평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1.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 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험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3.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 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끝.